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2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개정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수막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2원화(안 별표 제3호)

-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할 것을 포함한다)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그 밖의 용도'를 추가

나.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안 별표 제4호)

-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을 삭제함.

라. 점용료 산정기준 문구 수정(안 별표 비고 제1호, 제4호)

-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 단위당 점용료 ⇒ 점용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여 현수막 설치대상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별표 제3호).
-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적용요율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0 및 0.016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안 별표 제4호).
-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었던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점용료 부과에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짐(안 별표 비고 제1호).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의 기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대체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별표2)을 삭제함(안 제10조).
-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예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 : 종로구 외 14개 자치구

관 련 법 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소 재 지		
					갑지	을지	병지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09.30, 2008.05.29, 2008.09.30, 2011.7.28>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아치	도로횡단 기타	표시면적 1㎡	1년 244,000 122,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 주차장 10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16 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